

충청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기·제출일자 : '95. 4. 24

니·회부일자 : '95. 4. 24

3. 제안이유

-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.

4. 주요골자

- 심의위원회 구성범위 및 위원의 임기
- 위원회 기능 (심의사항)
-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의 수당지급등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바,
이는 우리 경제가 고도의 성장을 지속해 오면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수요는 급
격히 증대되어 왔으나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크게 부
족한 실정인 바, 이에 민간자본유치의 촉진을 유도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회
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
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
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첫째, 구성에 있어서는

-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
-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도록 했으며
- 위원으로는 충청북도의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
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고
-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
음.

둘째, 기능에 있어서는

-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
-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
-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
- 기타 민자유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들을 심의하
도록 하였음.

셋째, 회의에 있어서는

-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위원장이

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

-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는 부결되는 것으로 하였음.

넷째, 수당 및 여비에 있어서는

-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등 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제정 조례인은 승인하여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6. 본 임

- 충청북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(안)